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1. 2. 26.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포스텍 인권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거하여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구성원의 범위)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본교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생(휴학생, 본교에 일시적으로 학적을 두고 있는 교환학생 및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구생 등 학위과정의 수료생을 모두 포함한다)
2. 교원(비전임 교원을 포함한다)
3. 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4. 연구원
5. 본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서 본교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인권증진 교육의 시행) 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인권센터 이외의 부서가 주관하여 실시한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 등은 기존의 주관부서에서 이를 계속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이른바 ‘뒷담화’ 행위)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13. 타인 면전 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15. 업무 내외를 불문한 집단 따돌림 행위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제5조(운영현황 등의 보고) 센터장이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서 인권센터 운영현황 등을 총장 및 부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원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개별 사건의 처리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내의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연구·교육·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학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사안이 중대하여 인권센터장이 운영위원회에 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안
- ② 운영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예산과 결산
 3.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 ①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신분의 본교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및 인권증진 업무 전반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하며, 본교 소속이 아닌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자문위원의 역할 및 권한의 한계) ①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른 인권 자문위원은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② 인권 자문위원은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대책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대책위원회 회의소집 시한)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대책위원회 참관의 허용)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에 대책위원회는 참관이 허용된 사람의 의견을 그 회의 진행 중에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책위원회의 정족수 산정)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14조 제5항이나 제15조 제1항 또는 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서 대책위원을 한시 위촉한 경우 한시 위촉된 대책위원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 그 재적 위원 수를 산정한다.

제12조(대책위원회 위원명부의 제공) ①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1시간 전까지 피해자등,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책위원회 위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대책위원회 위원의 명부의 열람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은 기피신청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외에는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정보를 공개·누설·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책위원회 회의의 궐석 진행) 인권센터가 피신고인에게 3회의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 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인이 그에 불응하여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신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명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대책위원회 회의의 속회) 대책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회의를 1회 이상 속회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전 상담) ①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사건의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명시적인 신고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6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장의 결정에 따라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른 인권 자문위원 이외에도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제2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 인권센터장의 결정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원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 중인 때에는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인권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서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규정 제23조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권조사) 규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피신고인의 행위에 기한 피해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피신고인 아닌 사건관련자로 인하여 피해자,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등이 당해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8조(조사의 방법 등) ①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시에는 그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건관련자임을 고지하면서 신고된 내용의 요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석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 기한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인권센터장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출석 일자를 변경하거나

진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신고인, 피해자등 및 피신고인을 제외한 사건관련자(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는 인권센터장의 명을 받아 인권센터의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이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진술 등에 임의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가명을 사용한 절차진행 상의 유의사항)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가명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센터장은 이로 인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불가결정의 남용금지) 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불가결정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 요구 이외의 조치 시의 유의사항) 규정 제31조에 따른 징계 요구 이외의 조치를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피신고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구제를 사유로 하는 사건의 종결)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피해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인권센터가 별도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 센터장은 당해 신고를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서를 통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규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대책위원회는 그 이의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대책위원 전원(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시 위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다)의 의견으로 당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로 그 이의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규정 제22조 제1항과 제27조 제4항 및 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1. 이 운영세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